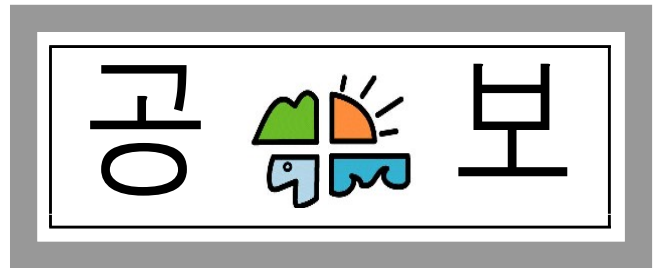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257호 2020년 4월 17일(금)

조 례

-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
-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7
-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6
-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 29
-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35
-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41

규 칙

-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51
-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고 시

- 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1-26호선, 중로3-19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58
-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59

공 고

- 2020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62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1호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중인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

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자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 선정방법) ①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2. 그 밖에 시장이 수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속초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자 선정 시 적격자
3.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적정여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분야 관련전문가 등 시장이 추천한 사람
-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 ④ 제2항의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은 재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제척·기피 및 회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자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
5. 시설의 안전관리
6. 지도·점검, 성과평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한다.

제15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자와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

의를 통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판단 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협약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7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자를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자는 그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② 「속초시 설악동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③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④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⑤ 「속초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숙초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숙초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로 한다.

⑥ 「숙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⑦ 「숙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⑧ 「숙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⑨ 「숙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⑩ 「숙초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⑪ 「숙초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초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⑫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⑬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16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⑭ 「속초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⑮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⑯ 「속초시 청호도선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⑰ 「속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⑮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⑯ 「속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⑰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⑱ 「속초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⑳ 「속초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㉑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

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㉔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㉕ 「속초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742호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2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3.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4.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기업 육성
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8. 마을공동체 만들기과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9.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

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주민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와 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다음 사업의 지원을 검토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분석·평가할 때 전문성과 실용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의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6.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자치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은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장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제20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공동체 사업계획 수립·실행지원
5.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축제·홍보·견학 지원
7.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 해제·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3호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 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한다.

제2조(「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속초시립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

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6조(「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 「속초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7조(「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8조(「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9조(「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속초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국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속초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1조(「속초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의 개정) 「속초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2조(「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의 개정) 「속초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3조(「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속초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4조(「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속초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속초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2744호

속초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

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
4. 시민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제3조(적용범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 확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4.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출판사·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①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2조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역서점을 생활문화시설로 인정

한다.

② 생활문화시설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의 공간(다만 매장과 문화공간의 구분은 불필요)
2.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③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
2.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3.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운영

④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방문·실사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유효기간) 생활문화시설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해 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취소 및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3. 평가 결과 인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0조(생활문화시설 인정 지역서점 지원) 시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시설로 인정된 지역서점의 문화프로그램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

신청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화/e-mail)
대상 서점 및 시설 개요	상 호	위치(주소)		영업 개시일
	전체면적 / 전용면적	문화활동 공간(면적)	설비 현황	
	m ² / m ²	m ²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8-16호, '18.3.9)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위 서점에 대한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생활문화프로그램 운영 실적 : 별첨

년 월 일

○○서점 대표 _____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별지 제2호 >

제 호

속초시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지정서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2년)

「속초시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따라 속초시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5호

속초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

전과 건강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만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시장은 수집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6호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3호 중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를 “어린이날 입장하는 모든 입장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7호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

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48호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미만인”을 “1년미만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산정함에 있어 점용일수가 15일이상일 경우에만 1월”을 “산정할 때 점용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에만 1개월”로, “미만일때”를 “미만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에 있어서”를 “산정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되, 「속초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를 따른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0일이 경과되기 전”을 “3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을 “6개월”로,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를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법 제14조에 따라 점용·사용허가사항에 대해 그 허가가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59호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명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사무
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규칙
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1호서식
의 속초시 민간위탁사무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숙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숙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속초시 ○○○○○○ 사무 위·수탁 계약서 표준안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속초시 사무를 위·수탁할 때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사 무 명	사 무 내 용

2. 위·수탁 시설 및 장비

장 비 명	내 용 및 수 량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계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증·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시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시정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시장과 수탁자는 이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협의에 의하여 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지휘·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 등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 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수탁자가 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제6조(계약의 변경) 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7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수탁자에게 위(수)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하고, 위(수)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모두 수탁자가 진다.

제8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수탁자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①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수탁자의 관리 부주의 등으로 훼손·파손·도난·분실 등을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제2조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5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시장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및 정산) 시장은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수탁자는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분기 종료 후 14일 이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수탁자가 입힌 손해나 제3자 등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어떠한 이유라도 시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서 공증 및 수탁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계약서 공증, 손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비용은 모두 수탁자가 부담 한다.

제14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시장과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16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소송은 시장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시장과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속초시장 ○○○ (직인)

“○○○”대표 ○○○ (인)

주) 이 표준안은 속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60호

속초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2조(「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3조(「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속초시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을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61호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속초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며, 속초시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속 초 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속초시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속초시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속초시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속초시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 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관인생략

[별지 제15호서식]

속초시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속초시 고시 제2020-55호

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19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건설부고시 제37호(1976.03.27.)로 최초 결정된“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1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지정 및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속 초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속초시 교동 618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19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6호선, 중로3-19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시 점	종 점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총연장	금회시행	기시행				
도로	중로1		26	20~26	보조간선	1,154	970	184	교동620-37 (중1-1)	교동784-37 (중1-1)	건설부고시 제37호 (1976.03.27.)	-
도로	중로3		19	15	보조간선	1,293	110	-	동명512-1 (중3-2)	금호601-2 (중1-26)	건설부고시 제37호 (1976.03.27.)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현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78, 502호(고운동, 세종 스마트큐브Ⅱ)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 기일: 2020. 04. 14. 예정
- 6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속초시청 건설도시과(033-639-3767) 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조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17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8,658.2	—	18,658.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8,135.8	—	18,135.8	97.2	
제3종일반주거지역	522.4	—	522.4	2.8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해당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30	조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85번지 일원	18,278	증) 380.2	18,658.2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결정(변경) 사유
변경	30	조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변경 - 18,278㎡ → 18,658.2 ㎡ (증 380.2㎡)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조정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62	12 ~ 15	집산 도로	257	중로1-8 조양 1540-4도	중로3-3 조양 1502-1도	일반 도로		1993.4.28. (속고 제93-11호)	

* 소로3-222호선 ⇒ 중로 3-62호선 변경(속고제2017-63호/2017.8.8.)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

■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A	16,623	17,004.2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85번지 일원	16,623	17,004.2	증) 381.2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도면표시 변 호	위치 (가구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30	A-1	용도	허용	◦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 제8호의 부대시설 및 제9호의 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높 이		◦ 29층 이하
		형 태		◦ 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옥탑층, 주현관, 지붕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배 치		◦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남향위주로 배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을 변화있게 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색 채		◦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주민에게 안정감과 리듬감을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연출
		건 축 선		-

6)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단지내 조경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차량출입 허용구간	◦ 결정도에 차량출입 허용구간으로 표현된 부분에 한하여 차량출입을 허용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2020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속 초 시 장

1. 부과대상지역 : 속초시 하수처리구역 내
2.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 2,213,000원/m³
3. 부과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건축물의 전체 오수발생량이 10m³/일 이상인 경우 10m³/일을 초과하는 양
4.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 ※ 붙임 : 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5. 부담주체
 -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
6.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
 - 부과대상 오수발생량(m³/일)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m³)
7. 부과·징수방법
 -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m² 이상인 경우에는 인가·허가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계산하여 부과
 - 징수 및 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준공 시에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면적이

100m² 미만인 경우에는 인가·허가시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공고 시행일부터 속초시 공고 제2019-162호는 폐지한다.
- ③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	주거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농업인 주택, 공관	200 L/인	200	농업인주택과 읍·면지역의 1일 오수발생량은	$N = 2.0 + (R - 2) \times 0.5$	N은 인원(인), R은 1호당 거실 개수(개)를 의미한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00 L/인	200	170L/인을 적용한다.	$N = 2.7 + (R - 2) \times 0.5$	1호가 1거실 ¹⁾ 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한다.
			기숙사, 고시원(제2종 근린생활시설) ²⁾ , 다중주택 ³⁾	7.5 L/m ²	200	개별취사시설이 있을 경우 단독주택용도를 적용한다.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A는 연면적 ⁴⁾ (m ²), P는 정원(인)을 의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12 L/m ²	150	—	$N = 0.060A$	—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장례식장	12 L/m ²	150	—	$N = 0.060A$	—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25 L/m ²	150	—	$N = 0.125A$	—
		종교 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제실(祭室), 사당	12 L/m ²	150	—	$N = 0.060A$	—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7.5 L/m ²	200	—	$N = 0.038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10 L/m ²	260	—	$N = 0.050A$	—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16 L/m ²	150	—	$N = 0.080A$	—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6 L/m ²	150	—	$N = 0.08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3	판매 및 영업 시설	시장 · 상점	도매시장, 마을공동구판장, 소매시장, 표구점, 소매점, 사진관, 의약품판매소, 도료류판매소, 서점, 장의사, 총포판매소, 애완동물점, 기축시장, 자동차영업소, 의료기기판매소	15 L/m ²	250	육류, 어류점의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 L/m ² ·일, BOD농도는 50mg/L을 가산한다.	N = 0.075A	—
			노래연습장	16 L/m ²	150	—	N = 0.080A	—
			기원	25 L/m ²	150	—	N = 0.125A	—
		위생을 관리하거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이용원, 미용원, 동물미용실	15 L/m ²	100	—	N = 0.075A	—
			세탁소	15 L/m ²	250	영업용 세탁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할 경우에는 시설별 설치용량을 1일 오수발생량에 추가한다.	N = 0.075A	—
			목욕장 ⁵⁾	46 L/m ²	100	—	N = 0.230A	—
			안마시술소, 안마원	15 L/m ²	100	—	N = 0.075A	—
			찜질방	16 L/m ²	100	목욕장이 있는 경우 목욕장에 대한 오수는 별도 산정한다.	N = 0.080A	—
		게임관련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25 L/m ²	150	—	N = 0.125A	—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		20 L/m ²	250	—	N = 0.100A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4 L/m ²	260	—	N = 0.057A	—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점 ⁶⁾	30 L/m ²	130	—	N = 0.150A	—
			휴게음식점 등	35 L/m ²	100	일반음식점의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일반음식점 용도를 적용한다.	N = 0.175A	—
		음식점	일반음식점	70 L/m ²	550	중식	N = 0.175A	—
					330	한식, 분식점		
					200	일식, 호프, 주점, 뷔페		
					150	서양식		
			부대급식시설 ⁷⁾		30 L/인	330	부대급식시설 유입농도의 경우 한식 농도를 적용한다.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4	의료 시설	종합병원		40 L/m ²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0.200A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 소	급식시설 있음	30 L/m ²	300		N = 0.150A	—
			급식시설 없음	25 L/m ²	150		N = 0.125A	—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 조산원	18 L/m ²	150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m ²	150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산후조리원	30 L/m ²	300	세탁시설이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0.150A	—
		동물병원, 인공수정센터		15 L/m ²	150	—	N = 0.075A	—
5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6 L/m ²	100	—	N = 0.050A N =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정원 산정식 적용이 가능하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교육원, 전문대학, 직업훈련 소	주간	7 L/m ² (중학교) 8 L/m ² (중학교 이 외)	100	—	N = 0.058A (중학교) N = 0.067A (중학교 이외) N = 0.33P	
			주·야간 병설	12 L/m ² (중학교) 14 L/m ² (중학교 이 외)		—	N = 0.100A (중학교) N = 0.116A (중학교 이외)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계측계량소		8 L/m ²	100	—	N = 0.067A N = 0.33P (정원이 명확한 경 우)	
		공공도서관, 독서실, 도 서관, 학원, 교습소		15 L/m ²	150	—	N = 0.075A	—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노인복지시설, 연 수원, 청소년 수련원,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 시설		9 L/m ²	20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 우)	—
		유스호스텔		9 L/m ²	140	—	N = 0.045A N =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6	운동 시설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헬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썰매장, 수영장, 놀이형 시설, 골 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15 L/m ²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 로 가산한다.	N = 0.075A	—
		골프장		30 L/m ²	100		N = 0.150A	—
		물놀이형 시설		40 L/m ²	100		N = 0.200A	—
		테니스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3 L/m ²	150		N = 0.01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2 L/m ²	150		N = 0.010A	—
		게이트 볼장	야간조명시설 있음	1 L/m ²	150		N = 0.005A	—
			야간조명시설 없음	0.5 L/m ²	150		N = 0.003A	—
		7	업무 시설	일반 업 무 시설	사무소, 결혼 상담소 등 소개 업소, 출판사, 신문사		15 L/m ²	100
금융업소	15 L/m ²				100	—	N = 0.150A	—
오피스텔	10 L/m ²				200	주거시설과 업무 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 각 공동주택 (아파트)과 사 무소 용도를 적 용한다.	N = 0.050A	주거시설과 업무 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 각 공동주택(아 파트)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한 다.
공공 업무 시설	외국공관, 공공 청사, 지역자치 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전신전화국, 건강보험공단사 무소			15 L/m ²	100	—	N = 0.150A	—
	보건소			18 L/m ²	150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90A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L/m ²	150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 0.075A	입원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8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고시원(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⁸⁾)	20 L/m ²	70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N= 0.080A	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0 L/m ²	140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취사시설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관광펜션	35 L/m ²	140	—	N= 0.140A	—
		농어촌민박시설	35 L/m ²	140	주거전용면적이 100 m ²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 시설 용도(취사 시설이 있는 경 우)를 적용할 수 있다.	N= 0.140A	주거전용면적이 100 m ² 이하인 주택이면서 객실이 2실 이하인 경우 일반숙박시설 용 도(취사시설이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다.
		일반야영장, 자동차야영장	9 L/m ²	320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 ⁹⁾ 등) 오수 가 발생하는 면 적만 합산한다.	N= 0.045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전체면적 중 숙영시설(객실, 캠핑장, 야영장 시설 ⁹⁾ 등) 오수가 발생하는 면적만 합산한다.
		글램핑장 등 고정숙영시설	20 L/m ²	140		N= 0.080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9	위락 시설	단란주점, 유흥주점	46 L/m ²	250	—	N= 0.230A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¹⁰⁾	15 L/m ²	100	—	N= 0.075A	—
		투전기업소, 카지노영업소,	25 L/m ²	150	—	N= 0.125A	—
		무도장, 무도학원	16 L/m ²	150	—	N= 0.080A	—
10	공업 시설	공장,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5 L/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식품제조가공업 ¹¹⁾	15 L/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제조업소, 수리점	5 L/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	5 L/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 액화석 유가스 충전소 등)	25 L/m ²	260	—	N= 0.500A	—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L)	비고	인원산정식	비고	
11	자동차 관련 시설	주차장 ¹²⁾ 주기장 ¹³⁾	25 L/m ²	260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 키는 관리사무 실, 화장실 등 의 면적만 합산 한다. (세차시설 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추 가한다.)	N= 0.500A	주차장·주기장 전체 면적 중 오수를 발생시 키는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면 적만 합산한다. (세차시설을 갖 추고 있는 경우 에는 1일 오수 발생량을 추가 한다.)	
		(자동차)매매장	15 L/m ²	100	전시면적 중 오 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 외한다.	N= 0.075A	전시면적 중 오 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은 제 외한다.	
12	공공용 시설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교도소),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국방·군사시설	7.5 L/m ²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촬영소	15 L/m ²	100	—	N= 0.075A	—	
		군대숙소	7.5 L/m ²	200	—	N= 0.038A N= 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공중화장실	170 L/m ²	260	—	N= 3.400A	—	
		주민공동 이용시설	마을회관	12 L/m ²	150	—	N= 0.060A	—
			마을공동작업 소, 대피소	5 L/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마을공동구판장	15 L/m ²	250	—	N= 0.075A	—
			공중화장실	170 L/m ²	260	—	N= 3.400A	—
			지역아동센터	6 L/m ²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에너지 공급·통신 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발전소, 변전 소, 도시가스배 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5 L/m ²	100	—	N= 0.125A N= 0.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13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16 L/m ²	150	—	N= 0.080A	—	
14	관광휴 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10 L/m ²	260	—	N= 0.050A	—	
		어린이회관	6 L/m ²	100	—	N= 0.050A N= 0.25P (정원이 명확한 경우)	—	
		관망탑	16 L/m ²	150	—	N= 0.080A	—	
		휴게소	20 L/m ²	260	—	N= 0.400A	—	

- 주. 1) 거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른 거실로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에 거실과 분리되어 별도 확보된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고시원을 말한다.
-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4)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 5) 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을 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반찬·죽·떡 가게 등).
- 7) 부대급식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상주는 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의 정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부대급식시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분류한다.
- 8) 다중생활시설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시설(취사시설이 없는 경우)을 말한다.
- 9) 야영장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9호의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말한다.
- 10)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은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 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되어 식품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판매하는 영업장을 말한다(예시 : 김치 공장 등).
- 12)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1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며, 다른 건축물 용도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 1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 두는 시설을 말한다.
- 14) A는 연면적(m^2), N은 인원(인), P는 정원(인), R은 1호당 거실의 개수(개)를 의미한다.